

현안분석 2013-03

입양 관련 법제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현안분석 2013-03

입양 관련 법제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박 광 동

입양 관련 법제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lan for Improving Legal System
Relating to Adoption

연구자 : 박광동(연구위원)
Park, Kwang-Dong

2013. 8. 16.

요 약 문

I.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정부에서는 입양에 따른 권리주체의 권리 보호 등을 고려한 다양한 개정방안을 구상하고 법률에 반영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입양 관련 법제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점과 법체계적 관점에서의 분석 및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입양특례법」을 중심으로 국민복지 지향적이며, 효율적인 입양 관련 법제개선 방안 연구를 그 목적으로 함.

II. 주요 내용

□ 우리나라 관련 법제

- 「민법」과 개별법으로의 구성
 - 「민법」, 「입양특례법」,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제 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 등.

□ 법제개선 방안

○ 입법체계적 관점

- 입양과 관련한 법률에서 개별법의 목적에 따라 연령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으나, 피입양자의 보호 측면에서 민법상의 13세 기준으로 맞추는 것이 타당함.
- 「민법」과 「입양특례법」에서 입양 관련 규정이 추상적인 것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함.

○ 법제도적 측면

- 국내입양우선추진제도나 입양숙려제도 및 입양허가제도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으나, 출생신고와 관련하여서는 출생등록제도의 전환이 필요함.

Ⅲ. 기대효과

□ 입양 관련 법률 방향성 제시

- 개정 관련 법체계적 입법 자료 제공
- 기타 각 부처의 정책수립 및 법제도 개선 시에 정책 및 입법 자료로 활용

▶ 주제어 : 입양, 민법, 입양특례법, 가족관계등록법, 헤이그국제아동
입양협약

Abstract

I . Background and Purpose

Background of this study

- Even though the government has designed various improvement plans in consideration of the protection of rights, etc. by the subject of rights according to the adoption and reflected such plans to the relevant laws, lots of practical problems have been still occurred.
- It is a necessary situation to analyze and improve the practical problems according to these adoption-related legal systems in the viewpoint of legal system.

Purpose of this study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plans for improving national welfare-oriented and effective adoption-related legal system aroun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II . Main Contents

Relevant Legal System in Korea

- Composition of 「Civil Law」 and individual laws

- The Civil Law,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the Act on Family Relation Registration, Etc., and the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Methods of improving the legal system

○ Legislative systematic viewpoint

- Even though adoption-related laws provide different age standards according to the purpose of individual laws, it is reasonable to adjust the age standard to the basis of 13 years-old as provided under the Civil Law in the aspect of protecting an adopted person.
-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abstract adoption-related regulations in the 「Civil Law」 an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 Legal systematic aspect

- The domestic adoption preference promotion system or the adoption deliberation system and the adoption approval system are somewhat reasonable, but it is necessary to convert the birth notice system to the birth registration system.

III. Expected Effect

Suggestion of the legal directionality about Adoption.

- Supply of the legislative data of legal system relating to the Amendment

- Utilization as the policy and legislation data in establishing the policy of each department and improving the legal policy of each department.

➤ Key Words : **Adoption, Civil Law,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The Act on Family Relation Registration, Th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목 차

요 약 문	3
Abstract	5
제 1 장 서 론	1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15
제 2 장 입양 관련 주요국 입법례와 우리나라 법제	17
제 1 절 주요국의 입법례 및 현황	17
1. 일 본	17
2. 프 랑 스	18
제 2 절 우리나라 법제 연혁	22
1. 「민 법」	22
2. 「입양특례법」	26
3. 「가족관계등록법」	31
4.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33
제 3 장 입양 관련 논의 및 개정안 현황	49
제 1 절 논의사항	49
제 2 절 최근 관련 법률 개정안 현황	50
1. 「입양특례법」	50
2. 「가족관계등록법」	56

제 4 장 입양 관련 법제개선방안	75
제 1 절 입법체계적 관점	75
1. 민 법	75
2. 입양특례법	78
제 2 절 법제도적 관점	81
1. 국내입양우선추진제도	81
2. 입양숙려제도	82
3. 입양 허가제도 및 출생신고 의무화	83
참 고 문 헌	85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입양은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친자관계를 인정하여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신분을 취득하게 하고자 하는 신분행위를 말한다.¹⁾ 이러한 입양은 가(家)를 위한 입양에서 양친(養親)을 위한 입양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양자를 위한 입양으로 발전하고 있다.²⁾

이러한 경향 아래 우리나라에서는 입양과 관련하여 입양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제도적, 법제적 개선하여 왔다.³⁾ 예컨대 1991년 1월 1일에 시행된 민법은 사후양자제도 폐지, 유언양자제도 폐지 등 양자를 위한 입양제도로의 전환을 도모하였고, 2008년 1월 1일 시행된 민법에서는 친양자제도를 신설하는 등 입양자의 복리를 위한 법제 개선이 있어 왔다.

특히 현행 「입양특례법」은 아동입양의 절차가 아동의 복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최선의 아동 보호는 출신가정과 출신국가 내에서 양육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 패러다임으로 국가 입양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은 인식하였다. 이를 위해, 이 법률의 체명을 「입양특례법」으로 변경하고, 국내외 입양 모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친생부모에게 양육에 관한 충분한 상담 및 양육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모의 직접 양육을 지원하고,

1)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실무[I], 법원행정처, 2012, 579면

2) 법원행정처, 전제서, 579면.

3) 「家를 위한 입양」에서 「자를 위한 입양」으로, 「계약형 입양」에서 「선고형 입양」으로, 「불완전입양」에서 「완전입양」으로! 그것이 현대 양자법의 기치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현소혜, “의명입양 제도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민사법학 제50호, 한국민사법학회, 2010.9, 548면].

아동이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나고 나서 입양동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양자가 된 사람에게 자신에 대한 입양정보 접근권을 부여하고, 국내입양의 우선 추진 의무화 등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⁴⁾

통계청에 따르면 현행 우리나라의 입양 추세(2002년에서 2012년 추이)와 관련하여서 전체 입양아동수는 4,059명('02년)에서 1,880명('12년)으로 감소추세이다. 특히 국외입양아동이 2,365명('02년)에서 755명('12년)으로 급감하였고, 국내아동수는 1,694명('02년)에서 1,125명('12년)으로 569명 감소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 추진,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등으로 전체 입양아동에서 국내입양이 차지하는 비율이 41.7%('02년)에서 59.8%('12년)으로 증가추세에 있다.⁵⁾

[참고] 입양현황⁶⁾

□ 연도별 국내외 입양현황

(단위: 명)

구분	계	2005년 이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 체	계	242,449	224,752	3,231	2,652	2,556	2,439	2,475	2,464	1,880
	국 내	77,082 (31.8%)	67,607	1,332 (41.2%)	1,388 (52.3%)	1,306 (51.1%)	1,314 (53.9%)	1,462 (59.1%)	1,548 (62.8%)	1,125 (59.8%)
	국 외	165,367 (68.2%)	157,145	1,899 (58.8%)	1,264 (47.7%)	1,250 (48.9%)	1,125 (46.1%)	1,013 (40.9%)	916 (37.2%)	755 (40.2%)

4)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4&query=%EC%9E%85%EC%96%91%ED%8A%B9%EB%A1%80#liBgcolor5>.

5)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2708.

6)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진영 장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서명,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3.5.24., 6면.

[참고] 입양현황										
□ 해외입양 대상 국가별 현황										
(단위: 명)										
년도	계	미 국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호주	캐나다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2008	1,250	988	8	76	20	45	18	78	16	1
2009	1,125	850	8	84	21	40	34	67	17	4
2010	1,013	775	6	74	21	43	18	60	12	4
2011	916	707	4	60	16	33	21	54	15	6
2012	755	592	4	49	10	26	13	45	9	7

또한 「입양특례법」상의 대상이 되는 요보호아동 발생 추세는 감소하고 있다.7)

발생유형별요보호아동현황8)										
(단위: 명)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발생유형 계	10,222	9,393	9,420	9,034	8,861	9,284	9,028	8,590	7,483	6,926
빈곤·실직·학대	4,463	4,265	4,877	4,925	5,354	5,876	4,994	4,613	3,928	3,944
비행·가출	595	581	1,413	802	748	706	707	772	741	708
미혼모	4,457	4,004	2,638	3,022	2,417	2,349	3,070	2,804	2,515	1,989
기 아	628	481	429	230	305	202	222	191	218	235
미 아	79	62	63	55	37	151	35	210	81	50

출처 : 보건복지부(『요보호아동현황보고』)
 * 1997~1999년 빈곤·실직·학대는 비행·가출을 포함

7) '00 : 9,085명 → '05 : 9,420명 → '08 : 9,284명 → '09 : 9,028명 → '10 : 8,590명 → '11 : 7,483명 → '12 : 6,926명[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421].

8)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421. 입양은

그런데 유기 아동 수는 「입양특례법」 시행 이전인 2010년부터 급격히 늘어났는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유기 아동 수는 2009년 52명, 2010년 69명, 2011년 127명, 2012년 139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중 베이비 박스에 유기된 아동수는 2010년 4명, 2011년 37명, 2012년 79명이었다고 한다⁹⁾. 이러한 결과치를 가지고 「입양특례법」에서 출생신고를 요구하기 때문에 미혼모들의 아동유기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¹⁰⁾ 이러한 통계 수치와는 달리 「입양특례법」시행(2012년 8월)을 기준으로 자료를 분석하면 시행 전 2011년과 시행 후 2012년을 백분율로 대비하여 볼 때 2011년 127건(48%), 2012년 139건(52%)로 「입양특례법」시행인 2012년 8월 기준으로 영아유기가 늘었다는 언론매체들의 보도는 사실과는 다른 해석이라고 평가된다.

또 「입양특례법」상의 입양에 대한 일정한 절차 때문에 유기 아동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은 아동의 인권을 배려하지 않은 태도라는 비판도 존재한다.¹¹⁾

이러한 입양과 관련한 정책적인 견지에서의 해석론에 따라 「입양특례법」 등의 입양 관련 법제의 개선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입양특례법」상의 입양과 관련한 쟁점 사항을 가지고 법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입양특례법」상의 입양 관련 법제의 개선의 필요성 여부 및 개정의견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요보호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민법」상의 입양(사인간의 입양)은 미포함 됨.

9)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709075&sid=E&tid=8>.

10) http://www.incr.org/html/gs_latest_news_view.php?idx=447&url=/html/gs_index.php.

11) 출생신고제마저 없애야 한다는 주장은 아동의 인권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입양 이후 아이가 어떻게 되든 간단한 절차로 입양 대상 아동을 늘리려는 목적 밖에 보이지 않는다[<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709075&sid=E&tid=8>].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최근 우리나라의 「입양특례법」상의 입양과 관련하여서는 국제입양과 국내입양의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에 국제적인 측면에서는 현행 입양관련 주요국가의 입법례 및 현황 등을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우선 우리나라가 2013년에 가입한 「국제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라고 한다.)의 수용에 따른 입양의 법제개선 방안에 대한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동성혼에 의한 입양문제도 최근 들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에서 동성혼에 대한 법제적인 수용이 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부분은 최근 동성혼에 대한 입법을 시행하게 된 프랑스에 대해서 동성혼자의 입양과 관련하여 간략히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도록 하겠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현행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따른 유기 아동에 대한 견해의 대립에 대한 법제적 타당성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입양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적 견해의 분석 및 현행 입양관련 입법안의 분석을 하여 우리나라의 「입양특례법」상의 입양 관련 법제개선 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제 2 장 입양 관련 주요국 입법례와 우리나라 법제

제 1 절 주요국의 입법례 및 현황

주요국의 고려 점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법제를 가지고 있는 일본과 최근 입양과 관련하여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1. 일 본

일본법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보통양자제도(민법 제792조이하)와 특별양자제도(민법 제817조의2 이하)가 있다. 전자는 양친과 양자(혹은 그 대낙권자)와의 사이의 입양의 합의 및 그 신고에 의해서 유효하게 양자관계가 성립하지만(같은법 제799조·제739조), 후자는 가정법원의 심판이라고 하는 재판에 의해서 양자관계가 성립한다(같은법 제817조의2 제1항). 그리고 양자관계의 해소에 있어 전자는 양당사자의 합의 및 그 신고(같은법 제811조·제812조·제739조), 또는 재판(같은법 제814조)에 의해 인정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인정된다(같은법 제817조의10).

일본에서의 양자관계의 신고에 있어서 이연(離縁[우리나라의 파양])이 비교적 많은 것도 특징적이다. 그리고 보통양자의 이연은 협의에 의하지만, 특별양자의 경우에는 재판상 이연만이 인정된다.

일본의 양자제도의 이용 실태에 대해서는 연간 약 90,000명 정도가 입양되지만, 그 중 특별양자는 1%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모두 보통양자이다. 한편 미성년양자의 인원수가 성년양자의 인원수의 반정도에 지나지 않는 점이 특징적이다.¹²⁾ 그런데 2010년의 실태조사에

12) 床谷文雄,『提言(報告のまとめをかねて)』, 家族〈社会と法〉25号, 2009, 106面.

의하면, 미성년양자의 건수가 성년양자의 건수보다 많다는 결과가 나타나서 종전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성년양자에 대해서는 특히 여성의 전혼 중의 자식 및 혼인의 자를 재혼상대의 남성이 보통양자로 입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¹³⁾. 또 자식의 혼인의 자를 자신의 양자로 입양한 사례도 있다.

또 성년양자에 대해서는 가(家)를 잇게 한다고 하는 의식 아래, 남성이 보통양자로 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상과 약간 다른 의미로의 이용실태로서 오로지 성을 바꿀 목적으로, 입양의사가 없으면서도 보통양자 입양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2. 프랑스

(1) 입법례와 현황

프랑스의 현행 양자제도는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는지 여부에 따라 단절형에 속하는 완전양자(adoption plénière)와 비단절형에 속하는 단순양자(adoption simple)의 2가지의 유형이 존재한다. 완전양자가 될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미성년자이어야 한다. 단순양자는 미성년뿐만 아니라 성년자도 양자로 할 수도 있다. 특히 미성년자를 양자로 하는 경우(단순양자로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양자는 「민법」 제347조 소정의 3개의 범주, 즉 부 및 모, 혹은 가족회(conseil de famille)가 양자를 인정해 주는 것에 유효하게 동의 한 아이(1호), 국가피후견자(2호), 「민법」 제350조 소정의 조건으로 유기가 선언된 아이(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3) 이 경우에는 자녀의 성을 재혼상대의 남성의 성으로 맞추는 편법으로서 보통 양자 입양이 이용되고 있다고 추측된다.

프랑스 「민법」의 조문상 양자제도는 완전양자가 먼저 규정되어 있고(제343조 이하), 단순양자(민법360조 이하)에 대해서는 완전양자의 규정이 많은 부분 준용된다(361조)라는 구조로 되어 있다.

오늘날 프랑스에서는 국제양자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프랑스 외무성이 발표하는 출신국으로부터 프랑스 초청에 필요한 양자 비자의 발행 인원수에 따르면, 2005년 4,136명이 정점이었고, 2006년은 3,977명, 2007년은 3,162명, 2008년은 3,271명, 2009년은 3,017명, 2010년은 3504명 등으로 감소 경향에 있다.¹⁴⁾

완전 양자 관계 설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판결을 외국에서 얻고, 아이를 프랑스에 데려 왔을 경우에 프랑스의 법원에 해당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명령(exequatur)을 받거나 혹은 양자 판결의 제기를 통하여 재차 프랑스의 양자 판결을 얻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낭트의 검사국(parquet)에 해당 외국판결을 완전 양자 관계 설정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사 신분 등록부에 직접 전기하도록 제기할 수도 있어, 심사의 결과 이 제기가 인정되면 법원에 갈 필요는 없다.

이것에 대해서, 외국에서 양자 판결을 얻지 않은 경우에는, 프랑스의 법원에서 양자판결을 얻지 않는 한, 프랑스에서 양자 관계 설정의 효력은 인정받지 못한다. 또, 외국에서 비단절형의 양자 판결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대심(大審)법원에서 집행명령을 얻어 단순 양자로 하는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¹⁵⁾ 동법의 내용에 따라서는 민법전 제370-5조에 의해, 대심법원에서의 재판을 거쳐 프랑스에서 완전 양자 관계 설정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 인정되기도 한다.

완전양자에 대한 2007년 프랑스 국내에서의 입양건수 1,140건을 보면 국가피후견자가 혼인 부부에 의해서 완전양자로 되는 경우가 가장 전형적이다. 그 다음에, 각 배우자의 전혼관계에서의 자의 입양이 「민

14) http://www.diplomatie.gouv.fr/fractions-france_830/adoptioninternationale_2605/index.html.

15) <http://www.adoption.gouv.fr/IMG/pdf/rapportColombani.pdf>.

법」 제345-1조의 조건을 충족시켜 완전양자의 형태로 행해지는 경우이다. 입양결정 판결시 양자의 연령은 평균 전자의 경우 2~3세, 후자의 경우 10세 정도이다.¹⁶⁾

단순양자에 대해서 보면, 단순양자는 국제양자를 입양하는 경우보다는 배우자의 전혼 관계에서의 자를 입양하는 경우(양친이 한 때의 배우자의 아이를 양자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압도적으로 많다.

(2) 동성혼에 의한 입양 문제

프랑스에서는 민법을 개정하여 2013년 5월 17일 「동성혼을 제도화하는 법률(법률 제2013-404호)」(Loi n°2013-404 du 17 mai 2013 ouvrant le mariage aux couples de personnes de même sexe.)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 법률에 의해 동성자 사이에서도 혼인을 하고,¹⁷⁾ 동시에 공동으로 입양 등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피입양자의 성명(姓名)에 관한 규정도 개정되었다. 지금까지 프랑스에서 동성자 사이에 형성할 수 있는 법률관계는 동거관계(concubinage)나 민사연대협약(pacte civil de solidarité: Pacs)등의 2가지의 공동생활 형태가 있었다. 민사연대협약은 1999년에 제도화된 이성 사이 또는 동성 사이의 혼인에 준한 동반자관계(partnership)를 규율한다. 그러나 민사연대협약에는 입양 등에 제한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 중에 프랑스정부는 2012년 11월 7일 동성혼을 제도화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하여, 2013년 5월 17일에 제도화한 것이다.

16) 金子 敬明, “養子制度の利用実態”, 千葉大学法学論集 第25卷第4号, 千葉大学法学会, 2011.3, 175-176面.

17) 동성간의 결혼을 허가한 나라들은 친자관계에 관해 매우 다른 입법안들을 채택하고 있다. 예컨대 포르투갈은 동성커플들에게는 입양과 인공수정을 금지하고 있으나, 스페인은 입양과 동성커플들이 결혼기간동안 얻은 자녀에 대해 친자관계를 맺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http://nas.na.go.kr/site?siteId=site-20111206-000001000&pageId=page-20111207-000001087&bd_mode=read&bd_recordId=2013010005151].

이 중 동성혼의 입양과 관련하여 보면, 프랑스에서 입양은 단순양자제도(adoption simple)(민법 제343조 등)나 완전양자제도(adoption pleniere)(민법 제360조 등), 어느 경우나 양친은 원칙으로서 양자보다 15세 이상 연상이어야 한다. 단순양자에 있어 양자에 대한 연령 제한이 없으나, 완전양자는 원칙으로서 15세 미만이 아니면 안된다. 이 단순양자제도 및 완전양자제도 각각에는 혼인 양당사자와 양자와의 사이에 공동양자를 할 수도 있고, 단독양자를 할 수도 있다. 다만, 공동양자를 하기 위하여는 동거하고 있는 혼인 양당사자만에 한하되, 특히 혼인한 지 2년 이상 경과하고, 혼인 양당사자가 28세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단독양자는 혼인의 요건은 불필요하고, 양친이 28세 이상이어야 한다.

이와 같이, 공동양자를 하기 위한 양친은 혼인 양당사자에게 한정되어 민사연대협약이나 동거관계의 당사자는 해당 양친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종래에는 동성 양당사자가 양자를 맞이하려면, 동성 양당사자 중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단독양자가 될 수 밖에 없었다. 또, 단순양자제도에서는 양친이 실친(實親)의 배우자가 아닌 한, 친권자는 양친이 되었다. 이 때문에, 공동생활을 하는 동성 양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친자와 단순양자를 입양하는 것은, 향후에 실친이 친자식과 살 예정과 관계 없이 실친으로부터 친권을 빼앗게 되는 결과가 되어, 피입양자의 이익에 반한다고 하여 판례상 인정되지 않았었다.¹⁸⁾

「동성혼을 제도화하는 법률(법률 제2013-404호)」에 의하여, 향후에는 동성혼 양당사자는 공동입양이나 그 한편의 친자식을 입양하여,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 동성자 사이에 그 한편의 양자를 공동으로 양육하고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이 양자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18) Cour de cassation, civile, Chambre civile 1, 20 février 2007, 06-15.647, Publié au bulletin, Legifrance. <<http://www.legifrance.gouv.fr/affichJuriJudi.do?oldAction=rechJuriJudi&idTexte=JURITEXT000017636211&fastReqId=476601251&fastPos=1>>

제 2 절 우리나라 법제 연혁

입양과 관련한 법률로는 크게 「민법」, 「입양특례법」,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고 한다)」, 「국제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 등을 제시할 수 있다.¹⁹⁾

1. 「민 법」

우리나라의 「민법」은 제정 1958.2.22 법률 제471호로 「민법」이 제정되었다. 현행 「민법」의 제정은 일정하에서 의용되던 일본민법전에 대체하여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할 새로운 「민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인 법생활의 안정을 기하려는 것이다.

이 중 입양과 관련한 중요내용으로는 ① 입양의 요건과 관련하여 양자를 할 능력(제866조), 사후양자(제867조), 15세미만자의 입양승낙(제869조), 입양의 동의(제870조), 미성년자입양의 동의(제871조), 후견인과 피후견인간의 입양(제872조), 금치산자의 입양(제873조), 부부의 공동입양(제874조), 직계장남자의 입양금지(제875조), 서양자(제876조), 양자의 금지(제877조), 입양의 효력발생(제878조), 사후양자의 신고(제879조), 유언에 의한 양자(제880조), 입양신고의 심사(제881조), 외국에서의 입양신고(제882조) 등을 규정하였다. ② 입양의 무효와 취소와 관련하여서는 입양무효의 원인(제883조), 입양취소청구권자(제885조), 입양취소청구권의 소멸(제889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③ 파양과 관련하여 협의상 파양(제898조), 15세미만자의 협의상 파양(제899조), 미성년자의 협의상 파양(제900조), 금치산자의 협의상 파양(제902조), 파양신고의 심사(제903조), 재판상 파양원인(제905조), 파양청구권의 소멸(제907조), 파양과 손해배상청구권(제908조)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다.

19) 이 밖에도 「가사소송법」, 「국제사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제7차 일부개정 1990.1.13 법률 제4199호 「민법」에서는 호주제도를 존치하되, 남녀평등정신에 반하는 호주계승을 목적으로 하는 직계비속장남자의 거가금지규정을 삭제하고, 친족의 범위를 조정하며, 실효성이 없는 호주권을 폐지하는 등 현행 「민법」의 가족관계규정중 불합리한 사항을 정리하려고 개정을 하였다.

이 중 입양과 관련한 중요내용으로는 ①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하여는 후견인이 동의함에 있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②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③ 배우자가 있는 자가 입양을 하는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도록 하고, 부부의 일방이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 ④ 사후양자제도, 서양자제도, 유언양자제도를 폐지하고,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의 입양금지규정을 삭제하였다.

제12차 일부개정 2005.3.31 법률 제7427호 「민법」에서는 종전 「민법」의 친족편에 규정되어 있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는 호주제도는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과 시대변화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폐지하고, 동성동본금혼제도와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입양제도의 현실을 반영하고 양자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친과 양자에게 친족관계를 인정하면서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는 친양자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이 중 입양과 관련한 중요내용으로는 종전 양자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자의 복리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제도를 신설하였다(법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 신설).

제18차 일부개정 2011.3.7 법률 제10429호(시행일 2013.7.1.)에서는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현재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은 물

론 미래에 정신적 능력이 약해질 상황에 대비하여 후견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재산 행위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한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년후견제로 확대·개편하고, 금치산·한정치산 선고의 청구권자에 후견감독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여 후견을 내실화하며, 성년후견 등을 요구하는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피성년후견인 등과 거래하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년후견 등에 관하여 등기로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의 조속화에 따라 성년연령을 낮추는 세계적 추세와 「공직선거법」 등의 법령 및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여 성년에 이르는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려는 것이다.

이 중 입양과 관련한 중요내용으로는 15세 미만자의 입양승낙(제869조), 미성년자입양의 동의(제871조), 피성년후견인의 입양(제873조), 입양취소청구권자(제887조), 입양취소청구권의 소멸(제893조), 15세 미만자의 협의과양(제899조), 피성년후견인의 협의과양(제902조) 등에 대한 개정이 있었다.

제19차 일부개정 2011.05.19 법률 제10645호(시행일 2013.7.1.) 「민법」에서는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 친권자로 정해지지 않았던 부모의 다른 일방을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후견이 개시되도록 하고, 입양이 취소되거나 과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 친생부모 또는 그 일방을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후견이 개시되도록 하여 부적격의 부 또는 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됨으로써 미성년자의 복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후견을 종료하고 친권자로 정해지

지 않았던 부모의 다른 일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게 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증진시키려는 것이다.

이 중 입양과 관련한 중요내용으로는 입양 취소, 과양 또는 양부모의 사망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의한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선임(안 제909조의2 신설)을 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입양이 취소되거나 과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도 친생부모 또는 그 일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친생부모 또는 그 일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는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였다.

제20차 일부개정 2012.2.10 법률 제11300호(시행일 2013.7.1.) 「민법」에서는 현재 미성년자의 입양(入養)과 과양(罷養)은 시·읍·면의 장에 대한 신고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아동학대의 습벽이 있는 사람 등도 손쉽게 입양을 할 수 있고 그 결과 미성년자의 복리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과양은 재판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하며,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 없이도 입양이 가능하게 하는 등 입양 제도를 개선하고, 친양자 입양 가능 연령을 현행 15세 미만에서 미성년자로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한편, 중혼에 대한 취소청구권자에 직계비속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이 중 입양과 관련한 중요내용으로는 ①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 도입 등(안 제867조 신설 및 제898조)을 규정하였다. ② 부모의 동의 없이 양자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안 제870조, 제871조 및 제908조의2제2항)하였다. ③ 친양자 입양 가능 연령을 완화하였다(안 제908조의2제1항제2호).

2. 「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은 1976.12.31 법률 제2977호로 제정되었다. 「입양특례법」 제안 이유로는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불우아동의 입양절차를 간소화하고, 양자로 된 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는 등 민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동시에 현행 「고아입양특례법」에 의한 국외입양의 추진에 있어서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를 이 법에 포함시킴으로써, 당해 불우아동의 국내외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이 법에 의하여 양자로 될 수 있는 자는 아동복지시설 등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로서 보호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자 또는 그 부모 등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호시설에 보호를 의뢰한 자 등으로 한다(제2조). ② 양친이 될 수 있는 자는 양자를 부양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교육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소양과 재산을 갖고 있는 자로 한다(제3조). ③ 입양의 동의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동의를,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의 동의를, 부모나 다른 직계존속이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할 경우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도록 한다(제4조). ④ 이 법에 의하여 입양되어 1년이 경과된 때에는 양자·양친·양부모 기타 관계인은 약취 또는 유인에 의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던 자가 양자로 된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를 제외하고는 입양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제5조). ⑤ 이 법에 의하여 양자로 되는 자는 양친의 원에 의하되, 과양이나 입양이 취소된 경우에는 본래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한다(제7조). ⑥ 외국인이 국외에서 입양을 원한 때에는 입양알선기관이 그 입양절

차를 취하도록 하고, 국외입양절차를 간소화한다(제9조). ⑦ 입양알선기관은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제10조). ⑧ 입양알선기관은 입양을 위하여 입양될 자의 성명·사진 또는 신분에 관한 사항을 광고할 수 없도록 한다(제11조).

제2차 전부개정 1995.1.5 법률 제4913호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절차중심의 입양제도를 요보호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로 발전시키고 입양아동 등에 대한 복지시책을 강구하며, 기타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전부 개정을 하였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제3조제2항). ②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양부모의 자격요건에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을 명시하여 추가하였다(제5조제1항제3호). ③ 입양기관의 장은 양부모에 대한 사전교육과 입양 후 적응상태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내입양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였다(제12조제4항 및 제5항).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양알선이 곤란한 자나, 이 법에 의한 입양이 취소되거나 과양선고를 받은 자로서 그 보호자가 입양기관에 보호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 입양기관의 장에게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상의 보호조치 또는 시설보호조치를 지체없이 취하도록 하였다(제15조). ⑤ 외국인으로부터 입양알선을 의뢰받은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알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그 양자로 될 자의 해외이주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여 국외입양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다(제17조). ⑥ 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대하여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제23조).

제5차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70호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국내외 입양기관간에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지금까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후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입양업무에 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법입양에 따른 인권유린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벌칙을 강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일부 개정을 한 것이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① 종전에는 국내외 입양기관간에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협약을 체결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법 제10조).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입양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실시하던 교육훈련제도를 폐지하여 입양기관이 동교육훈련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현행 제11조 삭제). ③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알선업무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하였다(법 제27조).

제8차 일부개정 2004.3.5 법률 제7183호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입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국내입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에 대하여 양육수당, 중개수수료 기타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제23조제1항중 “의료비 등”을 “양육수당·의료비 그 밖의 필요한”으로 개정하였다.

제9차 일부개정 2005.3.31 법률 제7448호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는 입양 활성화 및 입양 후 가정생활의 원만한 적응을 위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한편,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친이 될 자에게 입양알선에 소요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① 법 제3조제2항중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를 “태어난 가정에서 아동이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는”으로 한다. ② 제3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요보호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 후 가정생활의 원만한 적응을 위하여 일정한 사항을 실시하도록 한다. ③ 법 제3조의2에 입양의 날과 관련한 법적 근거 규정을 둔다. ④ 법 제20조에서는 입양기관이 양친이 될 자로부터 입양알선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수납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친이 될 자에게 입양알선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다.

제13차 전부개정 2011.8.4 법률 제11007호 「입양특례법」은 아동입양의 절차가 아동의 복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최선의 아동 보호는 출신가정과 출신국가 내에서 양육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 패러다임으로 국가 입양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 법률의 제명을 「입양특례법」으로 변경하고, 국내외 입양 모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친생부모에게 양육에 관한 충분한 상담 및 양육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모의 직접 양육을 지원하고, 아동이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나고 나서 입양동의를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양자가 된 사람에게 자신에 대한 입양정보 접근권을 부여하고, 국내입양의 우선 추진 의무화 등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이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의뢰 된 아동의 양친될 자를 국내에서 찾기 위한 시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입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의뢰

된 아동의 양친을 국내에서 찾기 위한 조치를 하고 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게 하며, 이러한 조치 및 관련 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협조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양친이 될 자를 찾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국외입양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7조).

② 양친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을 아동학대, 가정폭력, 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는 자로 강화하고,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안 제10조).

③ 이 법에 따라 입양을 하려는 자는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청구하도록 한다(안 제11조).

④ 친생부모의 입양동의를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 이루어지도록 하고, 입양동의를 관련하여 어떠한 금전,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대가적 급부가 없어야 하는 등 동의의 효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입양요건을 갖추도록 한다(안 제13조).

⑤ 양친, 양자, 검사는 양친이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경우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17조).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입양활성화 및 입양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중앙입양원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중앙입양원은 입양아동·가족정보 및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통합데이터베이스 운영, 입양아동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안 제26조).

⑦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자는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입양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며, 친생부모가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다(안 제36조제1항·제2항).

⑧ 친생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친생부모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및 양자된 자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의료상의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36조제3항).

3. 「가족관계등록법」

제정 2007.5.17 법률 제8435호 「가족관계등록법」은 「민법」이 개정(법률 제7427호 2005. 3. 31. 공포·시행)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를 마련하여 국민 개개인별로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분변동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그 등록정보를 사용목적에 따른 다양한 증명서 형태로 발급하도록 하고, 가족관계 등록 등의 사무를 국가사무화하여 대법원이 관장하도록 하고, 국적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국적업무의 관장기관인 법무부장관이 국적변동자의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이를 직접 통보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국민의 국적변동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 중 입양과 관련한 중요내용으로는 ① 목적별 다양한 증명서 발급 및 발급신청기준 명확화(법 제14조 및 제15조)와 관련하여 증명하려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 기본증명, 혼인관계증명, 입양관계증명, 친양자입양관계증명)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되, 증명서 교부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은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등 한정적으로만 인정하여 발급 요건을 더욱 강화하였다.

② 「민법」 개정에 따른 구체적 절차 마련(법 제67조 내지 제71조 및 제100조)와 관련하여 「민법」이 개정되어 친양자제도, 자의 성과 본

변경 등이 인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구체적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였다.

제2차 일부개정 2009.12.29 법률 제9832호 「가족관계등록법」은 현행 가족관계증명서에 친부모와 양부모가 함께 기록됨으로써 입양사실이 쉽게 드러나 입양가정의 사생활 보호에 하므로 입양관계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양부모만을 부모로 기록하고, 친부모 및 양부모는 입양관계증명서에 기록하여 입양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혼 등 과거의 기록사항을 전부 현출하는 전부증명 형식과는 별도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일부의 기록사항만을 현출하는 일부증명 형식의 증명서를 신설하는 한편,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자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가족관계등록사항이 기록된 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하고 제출받은 증명서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이다.

이 중 입양과 관련한 중요내용으로는 제14조제5항을 신설하여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자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록사항이 기록된 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출받은 증명서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두었다.

일부개정 2010.5.4 법률 제10279호 「가족관계등록법」은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배우자나 국제입양 또는 인지된 자녀 중 국적취득 이전인 외국인 가족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가족관계등록부로 한국인과의 가족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국인의 주민등록번호에 상응하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그 외국인의 동일성과 가족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중 입양과 관련한 중요내용으로는 각 규정 등에 외국인에 관한 사항을 적시하였다.

4.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1) 주요 내용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국제입양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고 국제법상 인정된 아동의 기본적 권리가 존중되면서 이루어지도록 국가관여 하에 보호조치를 확립하고, 그러한 보호조치가 준수되도록 함으로써 국제입양을 통한 아동 탈취·매매 또는 거래를 방지하도록 당사국 간의 협력 체제를 확립하며, 동 협약에 따라 이루어진 입양을 당사국이 승인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²⁰⁾ 이 협약은 전문과 7장 4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²¹⁾

1) 전문의 내용

이 협약의 서명국은 아동이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고 애정있고 이해하는 분위기 속에서 성장해야 함을 인정하며, 각국은 우선적으로 아동이 그의 출신가정의 보호 아래

20)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배경은 ‘국제입양’ 명목의 아동매매, 약취의 우려가 있는 행태가 세계적으로 만연함에 따라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국제법체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보건복지부, 전개보도자료(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3면].

21) 이하 성석호, 국제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2012. 9., 19-43면 [첨부 1]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영문/국문번역본 참조, 수정 및 요약.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상기하고, 국제입양이 출신국에서 적당한 가정을 발견하지 못한 아동에게 안정된 가정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인식하며, 국제입양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고 그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면서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아동의 탈취·매매 또는 거래가 방지되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을 확신하며, 이를 위해 국제문서, 특히 1989년 11월 20일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유엔협약」과 국내적·국제적 양육위탁과 입양을 특별히 언급하는 아동의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회적·법적 원칙에 관한 유엔선언(1986년 12월 3일의 총회결의 41/85)에 정한 원칙들을 고려하여, 공통의 규칙을 정립하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²²⁾라고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원칙적으로 원가정 보호를 하고, 보충적으로 원가정 보호가 불가능할 경우에 당해 국가에서 보호하고, 최종적으로 국제입양을 하도록 하고 있다.²³⁾

2) 협약의 범위(제1장)

이 협약의 목적은 ① 국제입양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그리고 「국제법」에서 인정된 그의 기본적인 권리가 존중되면서 이루어지도록 보호조치를 확립하고, ② 그러한 보호조치가 준수되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동의 탈취·매매 또는 거래를 방지하도록 체약국 간에 협력체제를 확립하며, ③ 이 협약에 따라 이루어진 입양을 체약국이 승인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협약은 어느 체약국(출신국)에 상거소를 둔 아동이, 다른 체약국(수령국)에 상거소를 둔 부부 또는 일인에 의해 출신국에서 입양된 후에 또는 수령국이나 출신국에서 그러한 입양을 하기 위해, 수령국으로 이동했거나 이동하고 있거나 또는 이동할 경우에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협약은 영구적인 친자관계를 창설하는 입양만을 대상으로 한다.

22) 성석호, 전계보고서, 19-20면.

23) 보건복지부, 전계보도자료(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3면 참조.

3) 국제입양의 요건(제2장)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입양은 출신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① 아동이 입양가능하다고 인정했고, ② 출신국 내에서의 아동의 위탁가능성을 적절히 고려한 후 국제입양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했으며, ③ 일정한 사실들을 확보했고,²⁴⁾ ④ 아동의 연령과 성숙정도를 고려하여 일정한 사실들을 확보했을 경우²⁵⁾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입양은 수령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① 양친 될 자가 입양할 자격이 있으며 입양에 적합하다고 결정하고, ② 양친 될 자가 필요한 상담을 받았다는 것을 확보하며, ③ 아동이 수령국에 입국하여 영주할 자격이 있거나 또는 있을 것이라고 결정한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

4) 중앙당국과 인가된 단체(제3장)

우선 중앙당국과 관련하여서는 체약국은 이 협약이 중앙당국에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중앙당국을 지정해야 한다. 이때 중앙당국은 아동을 보호하고 이 협약의 기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며 국내의 권한 있는 당국들간의 협력을 촉진시킨다.

24) ① 입양을 위해 동의를 필요한 사람·단체 및 기관들이 그에 필요한 상담을 받았고, 동意的 효력, 특히 입양에 의해 아동과 그의 출신가족간의 법적 관계가 종료되는지 여부에 대해 적절히 설명을 받았다는 것, ② 그러한 사람·단체 및 기관들이 자유의사로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동의하였고 이를 서면으로 표시하거나 입증하였다는 것, ③ 이 동의가 어떠한 종류의 금전지급이나 대가에 의해 기인된 것이 아니며 또 철회되지도 않았다는 것, 그리고 ④ 모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가 오직 아동의 출생 후에 부여되었다는 것 등.

25) ① 아동이 상담을 받았고, 입양의 효력과 아동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意的 효력에 대해 적절히 설명을 받았다는 것, ② 아동의 희망과 의견이 고려되었다는 것, ③ 입양을 위해 아동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가 자유의사로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그리고 서면으로 표시되거나 입증되었다는 것, ④ 그러한 동의는 어떠한 종류의 금전지급이나 대가에 의해 기인된 것이 아니라는 것 등.

그리고 중앙당국은 입양에 관련된 부당한 재정적 또는 기타 이득을 방지하며 이 협약의 목적에 반하는 모든 관행을 저지하기 위해 직접 또는 공적 기관을 통해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²⁶⁾ 또한 중앙당국은 직접 또는 공적 기관이나 국내에서 적법하게 인가된 단체를 통하여 특히 일정한 사항²⁷⁾을 위해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인가는 위임된 임무를 적절히 수행할 능력이 입증된 단체에게만 부여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가된 단체는 ① 인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정한 조건에 따라 그리고 그러한 제한범위 내에서 비영리 목적만을 추구해야 하고, ② 윤리적 수준과 훈련이나 경험으로 보아 국제입양 분야에서 활동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지도하고 운영해야 하며, ③ 조직·운영 그리고 재정상황에 대해 인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어느 체약국에서 인가된 단체가 다른 체약국에서 활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양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 단체에게 그러한 활동을 할 자격을 인정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5) 국제입양의 절차적 요건(제4장)

어느 체약국에 상거소를 둔 사람이 다른 체약국에 상거소를 둔 아동에 대해 입양을 원하는 경우에 그 자신이 상거소를 둔 국가의 중앙당국에 신청한다. 수령국의 중앙당국은 신청자가 입양할 자격이 있고 입양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그의 신원, 입양자격과 그 적합성, 배경,

26) 중앙당국들은 ① 입양에 관한 국내법 정보 및 통계와 표준서식과 같은 기타 일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② 이 협약의 운용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가능한 그 적용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직접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27) ① 입양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아동과 양친될 자의 상황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보존하며 교환하기 위해, ② 입양을 달성하기 위하여 절차를 용이하게 하고 준수하며 신속하게 하기 위해, ③ 국내에서 입양상담과 입양 후의 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해, ④ 국제입양의 경험에 관한 일반적인 평가보고서를 상호 제공하기 위해, ⑤ 국내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특별한 입양상황에 대한 다른 중앙당국이나 공적 기관으로부터의 정당한 정보요청에 응하기 위해 등.

가족사 및 병력, 사회적 환경, 입양이유, 국제입양능력 그리고 그가 양육하기에 적합한 아동의 특징 등에 관해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보고서는 수령국의 중앙당국이 출신국의 중앙당국에게 송부한다.

출신국의 중앙당국은 아동이 입양가능하다고 인정하면²⁸⁾ 아동에 관한 보고서, 필요한 동의를 얻었다는 증거와 위탁하기로 결정한 이유를 수령국의 중앙당국에 송부한다. 이 때 부모의 신원이 밝혀지는 것이 출신국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면 그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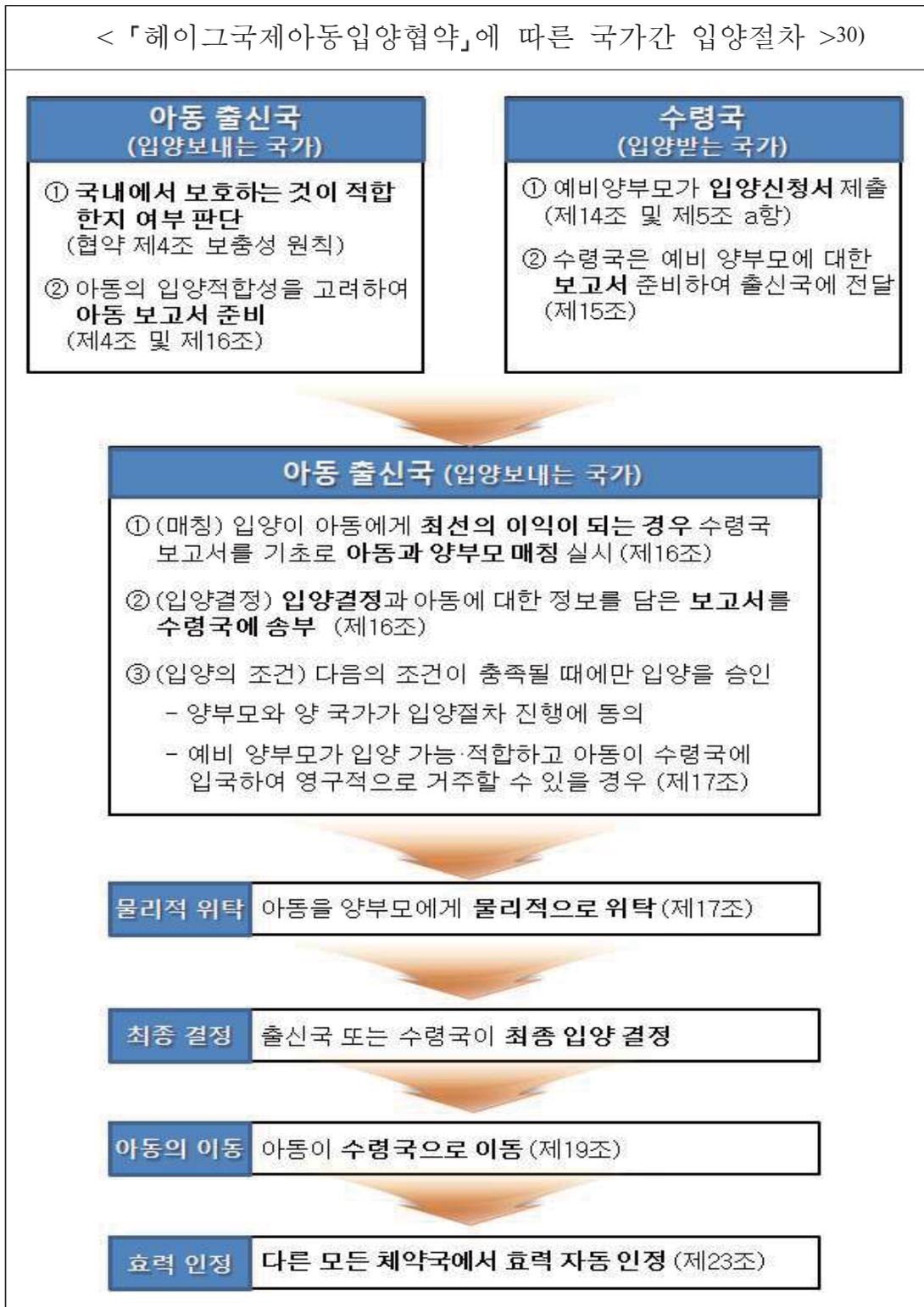
그리고 양국의 중앙당국은 아동이 출신국을 떠나 수령국에 입국하여 영주할 수 있는 허가를 얻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중앙당국은 입양과정, 그 완료를 위해 취해진 조치, 그리고 시험양육기간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위탁의 진행결과에 대하여 서로 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중앙당국이 속하는 국가의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공적 기관 또는 제3장의 인가된 단체가 수행할 수 있다.

수령국으로 아동이 이동한 후 입양이 이루어지기로 되어 있고 수령국의 중앙당국이 보기에 양친될 자에게 아동을 계속 위탁시키는 것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중앙당국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²⁹⁾ 특히 아동의 연령과 성숙정도를 고려하여 아동에게 상담하고, 적절하다면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아동의 동의도 얻는다.

28) 아동이 양친될 자에게 위탁되어야 한다는 출신국의 결정은 ① 출신국의 중앙당국이 양친될 자의 동의를 확보했을 것, ② 수령국의 중앙당국이 그러한 결정을 승인했을 것(다만 수령국의 법에 의해 또는 출신국의 중앙당국에 의해 그러한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양국의 중앙당국이 입양이 진행되는 것에 합의했을 것, ④ 양친될 자가 입양자격이 있고 입양에 적합하다는 것과 아동이 수령국에 입국하여 영주할 자격이 있거나 있을 것이라고 결정되었을 것 등과 같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29) ① 아동을 양친될 자로부터 격리시키고 잠정적인 보호조치를 취한다. ② 출신국의 중앙당국과 협의하여 입양을 위해 아동을 지체 없이 새로 위탁시키는 조치 또는 이것이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대신에 장기적인 보호조치를 취한다. 새로 양친될 자에 관해 출신국의 중앙당국이 적절히 통보받게 될 때까지 입양이 이루어져서는 아니된다. ③ 최후의 수단으로 그것이 아동의 이익에 합치한다면 아동을 돌려보내는 조치를 취한다.



30) 보건복지부, 전계보도자료(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4면.

6) 입양의 승인과 효과(제5장)

입양이 이 협약에 따라 행해졌다고 입양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 증명되는 경우에 그 입양은 법률상 당연히 다른 체약국에서 승인된다. 체약국은 서명·비준·수락·동의나 가입시 그 국가에서 증명을 행할 권한 있는 당국들의 이름과 기능을 이 협약의 수탁자에게 통보한다. 이들 당국의 지정에 대한 어떠한 변경도 수탁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체약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입양이 그 국가의 공서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에만 입양의 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이때 입양의 승인은 ① 아동과 양친 간의 법적 친자관계, ② 아동에 대한 양친의 부모로서의 책임, ③ 입양이 이루어진 국가에서 입양이 아동과 그의 부모 간에 존재하는 기존의 법률관계를 종료시키는 효과를 갖는 경우에는 그 종료의 승인을 포함한다.

입양이 기존의 법적 친자관계를 종료시키는 효과를 갖는 경우에 수령국과 입양이 승인된 수령국 이외의 체약국에 있어서 아동은 그 국가에서 이러한 효과를 갖는 입양으로부터 나오는 권리와 동등한 권리를 향유한다.

그리고 출신국에서 인정된 입양이 기존의 법적 친자관계를 종료시키는 효과를 갖지 않는 경우에는 이 협약에 따라 입양을 승인하는 수령국에서 수령국의 법이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국제입양 요건 중 일정한 사실의 확보 등(제4조 c호와 d호)에 언급된 동의가 그러한 입양을 목적으로 주어졌거나 주어지는 경우 등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한 효과를 갖는 입양으로 전환될 수 있다.

7) 일반조항(제6장)

이 협약은 자국에 상거소를 둔 아동의 입양은 자국에서 행해져야 한다거나 또는 입양에 앞서 수령국에 아동을 위탁 또는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출신국의 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가지고 있는 아동의 출생에 관한 정보, 특히 병력과 그 부모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보존해야 한다. 또한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 국가의 법이 인정하는 한 적절한 지도에 따라 아동 또는 그 대리인이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입양절차에 있어서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

이때 어느 누구도 국제입양에 관한 활동으로부터 부당한 재정적 또는 기타 이득을 얻어서는 아니 된다.

어느 권한 있는 당국이 이 협약의 어느 조항이 준수되지 않았거나 또는 준수되지 않을 중대한 위협에 있음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자국의 중앙당국에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이 중앙당국은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입양에 관해 다른 영역단위마다 적용될 둘 혹은 그 이상의 법제를 가진 국가에 대해서는 ① 그 국가에서의 상거소란 그 국가의 영역단위에서의 상거소를 말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② 그 국가의 법이란 관련된 영역단위에서 효력을 갖는 법을 말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③ 그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공적 기관이란 관련된 영역단위에서 활동할 자격이 부여된 그러한 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④ 그 국가의 인가된 단체란 관련된 영역단위에서 인가된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본다.

입양에 관해 인적 집단마다 달리 적용될 둘 혹은 그 이상의 법제를 가진 국가에 대해서는 그 국가의 법이란 그 국가의 법에 의해 정해진 법제를 말하는 것으로 본다.

입양에 관해 다른 영역단위마다 고유의 법규를 가진 국가는 통일된 법제를 가진 국가가 이 협약을 적용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협약을 적용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이 협약은 체약국이 당사국이며 이 협약이 다루고 있는 사항에 관해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국제문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국제문서의 당사국이 반대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협약에 대한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이 협약은 협약이 수령국과 출신국에서 효력을 발생한 후, 신청이 수리된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8) 최종규정(제7장)

이 협약이 규율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제가 적용되는 둘 혹은 그 이상의 영역단위를 가진 체약국은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당시에 이 협약이 그 지역단위의 전부 또는 하나 혹은 그 이상에만 확장하는 취지를 선언할 수 있고, 이 선언은 언제라도 또 다른 선언을 함으로써 수정할 수 있다. 이때 그 선언은 수탁자에게 통보되며 협약이 적용되는 지역단위를 명시한다. 만약 체약국이 동 조에 의한 어떠한 선언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협약은 그 국가의 모든 지역단위로 확장된다.

이 협약은 제43조에 정한 세 번째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의 기탁 후 3개월이 경과된 다음달의 1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그 이후 협약은 ① 그 후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하는 각 국가에 관하여는 그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후 3개월이 경과된 다음달의 1일, ② 협약이 확장된 영역단위에 관하여는 통보 후 3개월이 경과된 다음달의 1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2) 협약 가입의 필요성 및 가입 현황

1) 협약 가입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종래 「헤이그국제아동양양협약」의 가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그 논거로 삼았던 것은 대외적인 영향으로는 ① 「헤이그국

제아동입양협약」이 국제입양과 관련된 보편적 협약으로서의 기능이 강하다는 점, ② 동 협약의 가입은 우리나라가 1991년에 이미 비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하 “유엔아동권리협약”이라 함)³¹⁾」에 따른 의무사항³²⁾이라는 점, ③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성실한 이행 및 국제입양 아동의 보호와 사후관리를 위하여 우리나라에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가입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³³⁾한 점 등을 제시할 수 있다.³⁴⁾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협약 가입을 위한 국내준비 상황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점³⁵⁾ 등을 들 수 있다.

2) 가입현황

우리나라는 2013년 5월 24일에 네덜란드에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서명하였다. 이는 국제사회에 한국정부의 의지를 천명하기 위하여 새 정부의 국정과제(87-4. 입양아동 안전 및 권익보호)의 일환으로 협약 서명을 추진하게 되었다.³⁶⁾

31)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유엔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ivil) : 1989년 11월에 열린 제44차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조약으로, 전문 및 54개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세계 모든 아동을 방치, 착취, 학대로부터 지키기 위한 세계기준을 설정한 조약.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에 이를 비준하였음.

32) 아동권리협약 제21조 마항 :적절한 경우에 양자 또는 다자약정이나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이 조의 목적을 촉진시키며, 이러한 테두리 안에서 아동의 타국내 양육지정이 관계당국이나 기관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3) ① 유엔아동권리위원회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94) 및 제2차 보고서(‘99) 심의 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권고

② 국가인권위원회(2005년 4월 11일 결정) : 유엔아동입양협약 제21조의 성실한 이행 및 해외입양아동의 보호와 사후관리를 위하여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의 가입을 권고

34) 성석호, 전계보고서, 8-9면

35) 「입양특례법」 및 「민법」의 대대적인 개정으로 입양의 ‘가정법원 허가제’와 ‘입양 숙려제’가 도입되고, 양부모 자격강화와 과양요건 엄격화 등 입양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됨에 따라 협약 가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보건복지부, 전계보도자료(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1-2면].

36) 보건복지부, 전계보도자료(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1-2면.

[참고] 입양 관련 법령 현황(2013.7.9 기준)

번호	법령명	조문명
1	「가사소송규칙」	제62조 제3편 제2장 제7절 입양·친양자입양 또는 파양 에 관한 사건
2		제62조 입양허가의 절차 등
3		제62조의2 친양자 입양의 청구
4		제62조의7 입양의 청구
5	「가사소송법」	제30조 제2편 제3장 제2절 입양·친양자 입양관계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증명의 범위 및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제한
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4장 제4절 입양
8		제61조 입양신고의 기재사항
9		제62조 입양의 신고
10		제67조 제4장 제6절 친양자의 입양 및 파양
11		제67조 친양자의 입양신고
12	「국제사법」	제43조 입양및파양
13	「민 법」	제776조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 계의 소멸
14		제866조 제4편 제4장 제2절 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15		제866조 입양을 할 능력
16		제867조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제 2 장 입양 관련 주요국 입법례와 우리나라 법제

번호	법령명	조문명
17		제869조 입양 의 의사표시
18		제870조 미성년자 입양 에 대한 부모의 동의
19		제871조 성년자 입양 에 대한 부모의 동의
20		제873조 피성년후견인의 입양
21		제874조 부부의 공동 입양 등
22		제877조 입양 의 금지
23		제878조 입양 의 성립
24		제881조 입양 신고의 심사
25		제882조 외국에서의 입양 신고
26		제882조의2 입양 의 효력
27		제883조 제4편제4장제2절 제2관 입양 의 무효와 취소
28		제883조 입양 무효의 원인
29		제884조 입양 취소의 원인
30		제885조 입양 취소 청구권자
31		제886조 입양 취소 청구권자
32		제887조 입양 취소 청구권자
33		제888조 입양 취소 청구권자
34		제889조 입양 취소청구권의 소멸
35		제891조 입양 취소청구권의 소멸
36		제893조 입양 취소청구권의 소멸
37		제894조 입양 취소청구권의 소멸

번호	법령명	조문명
38		제896조 입양 취소청구권의 소멸
39		제908조의2 친양자 입양 의 요건 등
40		제908조의3 친양자 입양 의 효력
41		제908조의4 친양자 입양 의 취소 등
42		제908조의7 친양자 입양 의 취소·파양의 효력
4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3조의4 입양 자증명서류 등
44	「입양특례법」	제 4 조 입양 의 원칙
45		제 5 조 입양 의 날
46		제 7 조 국내 입양 우선추진
47		제 8 조 국외 입양 의 감축
48		제 9 조 제2장 입양 의 요건 및 효력
49		제12조 입양 의 동의
50		제13조 입양 동의를 요건 등
51		제14조 입양 의 효과
52		제15조 입양 의 효력발생
53		제16조 입양 의 취소
54		제18조 국내에서의 국외 입양
55		제19조 외국에서의 국외 입양
56		제20조 제3장 입양 기관 및 중앙 입양 원
57		제20조 입양 기관
58	제21조 입양 기관의 의무	

제 2 장 입양 관련 주요국 입법례와 우리나라 법제

번호	법령명	조문명
59		제22조 입양기관의장의 후견직무
60		제24조 입양알선이 곤란한 사람 등의 보호
61		제26조 중앙입양원의 설립
62		제27조 중앙입양원의 임직원 등
63		제30조 중앙입양원의지도·감독
64		제31조 제4장 입양아동등에 대한 복지지원
65		제36조 제5장 입양아동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66		제36조 입양정보의 공개 등
67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 4 조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의 내용
68		제 6 조 입양알선비용
69		제13조 공개 청구대상 입양정보
70		제14조 입양정보의 공개청구
71		제15조 입양정보공개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72		제16조 입양정보의 공개결정 및 통지
73		제17조 입양정보공개방법
74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 3 조 국내입양우선추진
75		제 9 조 입양허가신청시필요한서류
76		제10조 입양의 동의
77		제11조 친생부모와 입양될 아동에 대한 상담내용

번호	법령명	조문명	
78		제12조 국내에서의 국외입양 허가신청	
79		제16조 입양기관허가 등	
80		제17조 입양기관의 변경신고 등	
81		제18조 입양기관종사자의 보수 교육	
82		제19조 입양협약체결보고	
83		제20조 입양기관의 시설기준	
84		제21조 입양기관의 종사자기준	
85		제22조 입양아동등의인도와보고	
86		제23조 입양정보의 제공	
87		제24조 입양업무의 기록	
88		제25조 입양기록 및 전자기록의 보존	
89		제26조 중앙입양원임직원의 임명절차와 임기 등	
90		제29조 입양정보공개청구서	
91		제30조 입양정보공개동의서	
92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제 5 조 입양의 취소 및 파양의 소의 상대방
93			제10조 입양기관 등에 대한 통지
9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4조 입양에 관한 특례

제 3 장 입양 관련 논의 및 개정안 현황

제 1 절 논의사항

최근 입양과 관련하여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 제기에 따른 「입양특례법」의 개정에 대한 찬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최근 입양과 관련하여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입양특례법」의 개정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① 법원의 입양허가를 위한 친생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 요건이 미성년 미혼모 등에 의한 영아유기 문제, ② 법원의 입양허가 전까지의 입양아동의 대기기간 증가에 따른 대상 입양아동의 보호문제, ③ 국내입양우선추진제로 인해 장애아동의 국외입양이 지연되고 어려워지는 문제, ④ 입양숙려제 도입으로 인한 대상 입양아동에 대한 보호기간의 간극 문제 등을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³⁷⁾

이 중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제기 되고 있는 것은 법원의 입양허가를 위한 친생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 요건이 미성년 미혼모 등에 의한 영아유기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하여 입양특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입양특례법의 개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① 입양특례법 때문에 아동유기가 증가했다는 수치적 자료에 대한 신빙성 부족, ②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기록의 잔존 및 열람에 관한 잘못된 법률적 이해, ③ 과양의 경우 친생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동의 출산 사실이 재생성된다는지, 아동이 성년이 되어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서 친생모의 신원에 관한 기록을 알 수 있다는지, 의료보험 체계상에 있어서 미혼모 자신의 의료 기록에 아동의 출산과 치료에 관한 기록이 남는다는지 등, 문제의 소지가 되는 것들이 있다.

37) 안재진, “입양특례법 개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아동복지정책 현안과 정책과제 토론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4.5., 7-8면.

④ 영아 및 아동의 인권의 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입양특례법은 입양아의 권익증진과 친모(부)의 양육을 유도하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유엔 아동권리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 CRC) 제7조³⁸⁾에 부합한다.³⁹⁾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입양특례법」의 개정을 통해서 해결할 일이 아니고 「가족관계등록법」을 미세하게 손질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한다.⁴⁰⁾

제 2 절 최근 관련 법률 개정안 현황

1. 「입양특례법」

(1) 강기훈의원 대표발의(2012.7.6.)

1) 제안이유

2011년 8월 4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전부 개정되어 양친이 될 사람이 각종 범죄 및 약물중독 경력이 있을 시에는 입양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양친과 동거하는 사람이 위와 같은 경력이 있다면 본래의 개정 취지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의 실효성을 온전히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양친이 될 사람뿐만 아니라 양친과 동거를 하는 사람 또한 각종 범죄 및 약물중독 경력이 있다면, 입양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안 제10조제1항제3호).

38) 모든 아동은 출생시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부모의 양육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

39) 장성배, 해외입양, 입양특례법의 진실을 찾아서, 연합이매진 2013년 3월호, 연합뉴스, 2013.03, 107면.

40)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30220190301§ion=03.

2) 주요내용

제10조제1항제3호 중 “양친이 될 사람”을 “양친이 될 사람 및 그와 함께 동거하는 사람”으로 한다(안 제10조제1항제3호).

현 행	개정안
<p>제10조(양친이 될 자격 등) ① 이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p>1. 2. (생략)</p> <p>3.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p>	<p>제10조(양친이 될 자격 등) ①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양친이 될 사람 및 그와 함께 동거하는 사람</u>----- ----- ----- -----</p>

3) 검토

「입양특례법」 제10조제1항제3호 중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입양과 관련하여 양친뿐만 아니라 동거가족 중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있어서 양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양자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에 커다란 위험을 내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제10조제1항제3호 중 “양친이 될 사람”을 “양친이 될 사람 및 양친의 동거 가족”으로 개정하는 방안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백재현의원 대표발의(2013.1.18.)

1) 제안이유

입양은 친생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의 보호와 양육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입양제도는 모든 입양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복리증진이 최우선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2012년 8월부터 “입양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입양특례법」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자신이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에 대하여 “입양의뢰” 대신 “영아유기”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현행법은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출생신고 서류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미혼모들은 이와 같이 친자관계를 공적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영아유기, 불법입양, 낙태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행법은 입양의 동의를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하도록 하는 숙려기간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특히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에는 미혼모시설의 부족으로 충분히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PC방이나 모텔·화장실에서 출산할 경우 아동과 함께 1주일 이상 머물 곳을 찾기가 어려워 입양의뢰가 거부될 경우 영아유기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아동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국내입양의 어려움 등으로 장애아동을 유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미혼모가 가족관계등록이 되지 아니한 본인의 혼인의 출생자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 창설 절차의 개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양기관의 장이 그 아동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 창설 절차를 거

치도록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 미혼모에 대하여는 숙려기간의 예외를 인정하는 한편, 장애아동에 대하여는 국내입양과 국외입양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아유기를 예방하고 소중한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2) 주요내용

① 입양기관의 장은 장애아동의 입양이 의뢰된 경우에는 국내입양과 국외입양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7조의2 신설).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2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가 본인의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입양을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도 유효한 입양의 동의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안 제13조제1항 단서 신설).

③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2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가 가족관계등록이 되지 아니한 본인의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 창설 절차의 개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을 「민법」 제781조제4항에 따른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로 보고, 입양기관의 장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아동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 창설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안 제23조제2항 신설).

현 행	개정안
<신 설>	<p><u>제 7 조의2(장애아동 입양촉진) 입양기관의 장은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복지 지원법」 제2조제1호의 장애아동의 입양이 의뢰된 경우에는 국내입양과 국외입양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u></p>

3) 검토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면, ① 입양기관의 장은 장애아동의 입양이 의뢰된 경우에는 국내입양과 국외입양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입양기관의 장의 선택에 의해 추진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입양기관의 장의 선택에 따라 이행의 방식이 달라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장애아동의 복리향상을 위한 방안이라면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가 가입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아동이 그의 우리나라 가정의 보호 아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아동의 위탁가능성을 적절히 고려한 후 국제입양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되었어야 한다(article4 b). 그러므로 입양기관의 장은 장애아동의 입양이 의뢰된 경우에는 국내입양과 국외입양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을 법규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2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가 본인의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입양을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도 유효한 입양의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안 제13조제1항 단서 신설)는 규정의 도입에 대해서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과의 관련성 측면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 즉 ① 입양을 위해 동의가 필요한 사람·단체 및 기관들이 그에 필요한 상담을 받았고, 동意的 효력, 특히 입양에 의해 아동과 그의 출신가족간의 법적 관계가 종료되는지 여부에 대해 적절히 설명을 받았다는 것, ② 그러한 사람·단체 및 기관들이 자유의사로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동의하였고 이를 서면으로 표시하거나 입증하였다는 것, ③ 이 동의가 어떠한 종류의 금전지급이나 대가에 의해 기인

된 것이 아니며 또 철회되지도 않았다는 것, 그리고 ④ 모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가 오직 아동의 출생 후에 부여되었다는 것 등에 대한 사실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즉, 청소년 한부모가 본인의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유효한 입양동의를 해당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특히 한부모가 어머니인 경우에 출산 직후에 입양에 대한 동의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심리적 측면 및 입양절차가 엄격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례라고 보기 어렵다.

③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2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가 가족관계등록이 되지 아니한 본인의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 창설 절차의 개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을 「민법」 제781조제4항에 따른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로 보고, 입양기관의 장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아동에 대한 가족관계등록 창설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새로운 규정을 두는 것 보다는 「입양특례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친생부모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포섭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령의 명확성 차원에서 타당할 것이다.

2. 「가족관계등록법」

(1) 정부 발의(2013.4.16.)

1) 제안이유

현행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성년후견제로 확대·개편하고, 단독 친권자의 사망, 입양 취소, 과양(罷養)이나 양부모 사망의 경우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며,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 법률 제10645호, 2011. 5. 19. 공포, 2013. 7. 1. 시행 및 법률 제11300호, 2012. 2. 10. 공포, 2013. 7. 1. 시행) 됨에 따라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정착을 위하여 이와 관련한 신고의무 등을 정하는 한편, 가족관계등록부와 폐쇄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의 열람 제도를 도입하고, 국적취득자의 성(姓)과 본(本)의 창설허가 재판 등의 심리와 관련하여 가정법원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족관계등록과 관련한 각종 신고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2) 주요내용

① 기록사항의 열람제도 도입(안 제14조제7항 신설)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는 가족관계등록부와 폐쇄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입양 신고 관련 규정 정비(안 제62조 등)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가 도입됨에 따라,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입양 신고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개정 「민법」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③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하거나 선임하는 재판의 확정에 따른 신고의무 도입(안 제79조제2항)

단독 친권자의 사망, 입양 취소, 파양 또는 양부모 사망의 경우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친권자나 그 임무대행자를 지정하거나 선임하도

록 하는 개정 「민법」에 맞추어 그 지정·선임의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다.

④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신고(안 제108조의2부터 제108조의6까지 신설)

민원인이 직접 가족관계등록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 관련 각종 신고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읍·면의 장이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써 해당 서류의 첨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한다.

현 행	개정안
<p>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① ~ ⑥ (생 략) <신 설></p>	<p>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p> <p>⑦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기록사항에 대하여는 친양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만 청구할 수 있다.</p>
<p>제18조(등록부의 정정) ① (생 략)</p> <p>② 제1항 본문의 통지를 할 수 없을 때 또는 통지를 하였으나 정정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는 때 또는 그 기록의 착오 또는 누락</p>	<p>제18조(등록부의 정정)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u>그 기록의 착오 또는 누락이</u></p>

현행	개정안
<p>이 시·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 또는 시·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정정하고,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p>	<p><u>시·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u> ----- ----- ----- ----- ----- -----.</p>
<p>③ (생략)</p>	<p>③ (현행과 같음)</p>
<p>제26조(신고인이 무능력자인 경우)</p>	<p>제26조(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p>
<p>① 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때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신고의무자로 한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가 신고를 하여도 된다.</p>	<p><u>① 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을 신고의무자로 한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본인이 신고를 하여도 된다.</u></p>
<p>②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p><u>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u></p>
<p>1. 신고하여야 할 사람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p>	<p><u>1. 신고하여야 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u></p>
<p>2. 무능력자가 된 원인</p>	<p><u>2. 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사실</u></p>
<p>3. 신고인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라는 사실</p>	<p><u>3. 신고인이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라는 사실</u></p>
<p>제27조(동의를 불필요한 무능력자의 신고) ① 무능력자가 그 법정대리</p>	<p><u>제27조(동의를 불필요한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신고)</u> ① 미</p>

현 행	개정안
<p>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는 무능력자가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금치산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신고사건의 성질 및 효과를 이해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제32조(동의, 승낙 또는 허가를 요하는 사건의 신고) ① 신고사건에 있어서 부·모 또는 다른 사람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친족회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친족회의 결의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밖의 동의 또는 승낙에 있어서는 동의 또는 승낙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신고서에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62조(입양의 신고) ① 양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민법」 제869조에 따라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u>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u></p> <p><u>② 피성년후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신고사건의 성질 및 효과를 이해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u></p> <p><u>제32조(동의, 승낙 또는 허가를 요하는 사건의 신고) ① 신고사건에서 부·모 또는 다른 사람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또는 승낙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신고서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함으로써 그 서면의 첨부를 갈음할 수 있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u>제62조(입양의 신고) ①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민법」 제869조 제2항에 따라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u></p> <p><u>② 「민법」 제867조에 따라 미성년자를 입양하는 경우 또는 같은</u></p>

현행	개정안
<p>② 「민법」 제871조에 따라 후견인이 입양의 동의를 한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서 및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③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제64조(협의상 파양의 신고) ① 「민법」 제899조에 따라 협의상 파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사람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고를 후견인 또는 생가(生家)의 다른 직계존속이 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② 「민법」 제900조에 따른 협의상 파양에 관하여 후견인이 파양의 동의를 한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서 및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제9절 친권 및 후견</p> <p>제79조(친권자 지정 및 변경 신고)</p> <p>① (생략)</p> <p>② 친권이나 관리권의 상실·사퇴·회복에 관한 재판 또는 「민법」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친권자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p>	<p><u>법 제873조에 따라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u></p> <p><u>③ 「민법」 제871조제2항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첨부하여야 한다.</u></p> <p><삭 제></p> <p>제9절 친권 및 미성년후견</p> <p>제79조(친권자 지정 및 변경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p> <p><u>② 다음 각 호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해진 사람이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u></p>

현행	개정안
<p>는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 또는 그 재판으로 친권자로 정하여진 사람이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8조를 준용한다.</p> <p>제80조(후견개시신고의 기재사항) ① 후견개시의 신고는 후견인이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p> <p>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2. 후견개시의 원인 및 연월일 3. 후견인이 취임한 연월일 <p>제81조(후견인 경질신고 등) ① 후견인이 경질된 경우에는 후임자</p>	<p>한다. 이 경우 신고기간, 신고서의 첨부서류 등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친권이나 관리권의 상실·사퇴·회복에 관한 재판 2. 「민법」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친권자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재판 3. 「민법」 제909조의2(같은 법 제927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27조의2제2항 및 제931조제2항에 따라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하거나 선임하는 재판 <p>제80조(미성년후견 개시신고의 기재사항) ① 미성년후견 개시의 신고는 미성년후견인이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p> <p>②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성년자와 미성년후견인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 미성년후견 개시의 원인 및 연월일 3. 미성년후견인이 취임한 연월일 <p>제81조(미성년후견인 경질신고 등) ① 미성년후견인-----</p>

현행	개정안
<p>는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제79조제2항은 「민법」 제940조에 따라 후견인이 변경된 경우에 준용한다.</p> <p>제82조(유언 또는 재판에 따른 후견인의 선정) ① 유언에 의하여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에 관한 유언서 그 등본 또는 유언 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p> <p>② 후견인선임의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서의 등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p> <p>제83조(후견종료신고) ① 후견종료의 신고는 후견인이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의 성년 도달로 인하여 후견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p>1. 피후견인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p>	<p>-----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민법」 제939조 또는 제940조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사임하거나 변경된 경우 신고인, 신고기간과 신고서의 첨부서류 등에 관하여는 제79조제2항을 준용한다.</p> <p>제82조(유언 또는 재판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의 선정) ① ----- 미성년후견인----- ----- -----.</p> <p>② <u>미성년후견인 선임</u>----- -----.</p> <p>제83조(미성년후견 종료신고) ① <u>미성년후견 종료의 신고는 미성년후견인이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미성년후견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② <u>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u></p> <p><u>1. 미성년자와 미성년후견인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u></p>

현 행	개정안
<p>2. 후견종료의 원인 및 연월일</p> <p>③ 후견종료의 원인이 「민법」 제 939조 또는 같은 법 제940조에 따른 것인 때에는 재판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신 설></p>	<p><u>2. 미성년후견 종료의 원인 및 연월일</u></p> <p><u>제83조의2(미성년후견감독 개시신고)</u></p> <p>① 미성년후견감독 개시의 신고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p> <p>②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p> <p>1. 미성년후견감독인, 미성년후견인 및 미성년자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p> <p>2. 미성년후견감독 개시의 원인 및 연월일</p> <p>3.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취임한 연월일</p> <p><u>제83조의3(미성년후견감독인의 경질 신고 등)</u> ① 미성년후견감독인이 경질된 경우에는 후임자는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 83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p> <p>③ 「민법」 제940조의7에 따라 준</p>

현 행	개정안
<p><신 설></p>	<p><u>용되는 같은 법 제939조 또는 제 940조에 따라 미성년후견감독인 이 사임하거나 변경된 경우 신고인, 신고기간과 신고서의 첨부서류 등에 관하여는 제79조제2항을 준용한다.</u></p> <p><u>제83조의4(유언 또는 재판에 따른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정)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한 경우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 선임의 재판이 있는 경우에 신고서의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제82조를 준용한다.</u></p>
<p><신 설></p>	<p><u>제83조의5(미성년후견감독 종료신고)</u></p> <p><u>① 미성년후견감독 종료의 신고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미성년후견감독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u>②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u></p> <p><u>1. 미성년후견감독인, 미성년후견인 및 미성년자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u></p> <p><u>2. 미성년후견감독 종료의 원인 및 연월일</u></p>

제 3 장 입양 관련 논의 및 개정안 현황

현 행	개정안
<p>제96조(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① ~ ⑤ (생략)</p> <p><신설></p>	<p>제96조(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은 심리(審理)를 위하여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성·본 창설허가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p>
<p>제99조(개명신고) ① ~ ③ (생략)</p> <p><신설></p>	<p>제99조(개명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1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p>
<p>제101조(가족관계 등록 창설신고) ① ~ ③ (생략)</p> <p><신설></p>	<p>제101조(가족관계 등록 창설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1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p>
<p>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생략)</p> <p><신설></p>	<p>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p>
<p>제105조(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 (생략)</p>	<p>제105조(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현 행	개정안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
<신 설>	<u>제 5 장의2 등록사무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특례</u>
<신 설>	<u>제108조의2(신고에 관한 특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록에 관한 신고(등록부의 정정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u>
<신 설>	<u>제108조의3(등록사무처리의 특례) 제108조의2에 따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이 처리한다. 다만,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주소지 시·읍·면의 장이 처리하고, 외국인에 관한 신고인 경우에는 그 거주지 시·읍·면의 장이 처리한다.</u>
<신 설>	<u>제108조의4(신고의 접수 시기) 제108조의2에 따른 신고는 이 법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u>
<신 설>	<u>제108조의5(신고불수리의 통지에 관한 특례) 제43조에 따른 신고불수리의 통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u>

현 행	개정안
<신 설>	<u>제108조의6(첨부서류의 전자적 확인)</u> <u>시·읍·면의 장이 등록사무를</u> <u>처리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u> <u>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u> <u>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u> <u>로 해당 서류의 첨부를 갈음한다.</u>

3) 검 토

① 전자적 방법에 의한 기록사항 열람청구제도 도입은 국민의 정보 접근성 강화와 편의성 도모라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인다. 다만, 단순 열람에 대한 법적 효과의 부여를 어느 정도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열람에 그칠 것인지 인터넷 발급까지 할 것인지에 따라 법제개선의 방식에 변화가 있을 것이므로, 이에 명확한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

②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하거나 선임하는 재판의 확정에 따른 신고의무 도입 및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가 도입됨 등에 따라, 개정 「민법」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은 입법의 유기성 및 입법체계 관점에서 타당하다.

③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것에 관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구축을 전제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컨대 입양 주체 및 관련자 등의 진정성 확보 문제, 관련 서류 등의 진정성 확보 문제, 네트워크 오류 등에 대한 법적 처리 문제, 처벌규정의 도입 등 제도 구축에 따라 다양하고 치밀한 법제적 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 남인순의원 대표발의(2013.5.9.)

1)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이 아닌 부모자관계를 증명하는 것에 불과함에도 가족관계증명서의 전부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증명서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제한이 없음. 또한 그 명칭상으로도 혼란이 있고 한부모(미혼부모)가정이나 입양부모(위탁부모 또는 입양부모)가정 등 신분노출을 꺼리는 가족에게 정보공개에 따른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친양자의 경우 친부모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고 있으므로 친부모의 동의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주요내용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사생활침해를 방지하고 증명서 발급에 따른 신분상 정보공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부모자관계증명서”로 명칭변경하고 가족관계증명서의 전부가 아닌 증명서의 일부(기초사항증명서) 교부를 원칙으로 하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있어 공개되는 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안 제14조 등).

현 행	개정안
<p>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이하 이 조에서는 “본인등”이라 한다)는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p>	<p>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① 본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 및 본인사망 후 법정상속인은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이하 이 조에서는 “본인등”이라</p>

현 행	개정안
<p>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이 아닌 경우에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p>	<p>한다)나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제15조의2에 규정된 기초사항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 -----.</p>
<p>1. ~ 4. (생략)</p> <p>② ~ ⑥ (생략)</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①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와 그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외국인의 기록사항에 관하여는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① ----- ----- ----- ----- ----- -----.</p>
<p>1. <u>가족관계증명서</u> 가.·나. (생략) 다. 배우자,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p>	<p>1. <u>부모자관계증명서</u>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자녀의----- ----- -----</p>
<p>2. ~ 4. (생략)</p> <p>5. <u>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u> 가. (생략) 나.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u>주민등록번호</u></p>	<p>2. ~ 4. (현행과 같음)</p> <p>5. ----- 가. (현행과 같음) 나. ----- ----- -----<u>주민등록번호</u> (성인이 된 친양자에 대하여는</p>

현행	개정안
<p>다. (생략)</p> <p>② 제1항 각 호의 증명서의 기록사항 중 일부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증명서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p> <p>③ (생략)</p> <p><신설></p>	<p><u>친부모의 동의가 없는 경우 친부모의 인적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한다)</u></p> <p>다. (현행과 같음)</p> <p>② <u>신청인의 청구가 없는 한 제1항 각 호의 증명서의 발급은 기초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의 발급을 원칙으로 한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5조의2(기초사항증명서의 기록사항 등) ① 제15조제2항의 기초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이하 “기초사항증명서”라고 한다)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의 기록사항 중 정정이력사항 및 다음 각 호와 관련된 기록사항을 제외하고 작성된 증명서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모자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혼인 외 또는 전혼 중의 자녀 나. 사망한 자녀 2. 기본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기아발견 나. 인 지 다. 친권. 후견 라. 실종선고취소 마. 국적취득 바. 성. 본 창설 및 변경 사. 개 명 아. 가족관계등록창설

현 행	개정안
	<p>3. <u>혼인관계증명서</u> 가. <u>혼인취소</u> 나. <u>이 혼</u> 다. <u>사망한 배우자</u></p> <p>4. <u>입양관계증명서</u> 가. <u>입양취소</u> 나. <u>과양</u></p> <p>5. <u>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u> 가. <u>친양자입양취소</u> 나. <u>친양자과양</u></p> <p>② <u>기초사항증명서에는 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증명서의 제목 이외 별도의 표기를 하지 아니하며, 정정이력사항 및 제1항 각호의 기록을 모두 포함한 증명서에는 신청인의 청구에 따라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부증명이라는 취지를 표시할 수 있다.</u></p>

3) 검토

첫째, 가족관계증명서를 “부모자관계증명서”로서의 명칭변경은 입법정책의 문제인데, 이러한 입법정책의 결정시 국민적 공감대, 시기의 적절성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 현행법이 가족관계등록법인 상황에서 관련 서식을 부모자관계증명서로 명칭 변경하는 것은 국민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과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입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가족관계증명서의 전부가 아닌 증명서의 일부(기초사항증명서) 교부를 원칙으로 하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있어 공개되는 내용을 제한하는 것에 관해서는 기초사항의 범위 설정 문제 및 공개 및 비공개

에 대한 관련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기본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⁴¹⁾ 기본증명서와 기초사항증명서와의 차이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 발급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어떠한 절차적 방식을 통하여 공개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41) 시행 초기의 증명서 현출방식은 과거의 사건 모두를 현출하는 전부사항 증명방식이어서 혼인관계, 친권 및 입양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여과없이 현출됨으로써 사회적인 편견으로 인한 불이익, 프라이버시권 및 인격권의 침해문제가 제기되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9. 1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전부증명 형식과는 별도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일부의 기록사항만을 현출하는 일부증명 형식의 증명서가 신설되어 2011. 12. 30.부터 시행되었다[<http://efamily.scourt.go.kr/cs/CsBltnWrtGuide.do?bltnbordId=0000009&guideCd=0000009004&guideYn=Y>].

제 4 장 입양 관련 법제개선방안

제 1 절 입법체계적 관점

입양 관련 법제에는 민법, 입양특례법, 가족관계등록법 등이 있으나, 입법체계적인 관점에서는 민법 및 입양특례법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가족관계등록법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민법 및 입양특례법상의 내용 중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1. 민 법

(1) 입양의 의사표시 기준-13세

민법 제869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인 경우를 기준으로 먼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받아 입양을 승낙하여야 한다(제869조 제1항). 그리고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입양을 승낙하도록 되어 있다(제869조 제2항).

이 조항은 다수의 국가에서 미성년자의 승낙을 요하는 나이를 13세 또는 14세로 하고 있다는 점 및 미성년자의 자율성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2011년 3월 7일에 개정된 사항이다.⁴²⁾

이때 양자가 될 사람의 연령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법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 법률 중 13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군사법원법, 도로교통법, 민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환경보건법 등

42) 우선 기준 연령을 15세에서 13세로 낮춘 것은, 많은 나라에서 미성년자 본인의 승낙을 요하는 나이를 13세 또는 14세로 하고 있고, 미성년자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면에서 15세보다는 낮추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윤진수/현소혜, 2013년 개정민법해설, 법무부, 2013, 205면]

이 있다. 다만, 민법과 입양특례법은 민법이 입양과 관련하여 기준연령을 13세로 낮추면서 입양특례법도 기준 조정을 한 것이다.

그리고 13세와 관련한 법률은 주로 형사법과 관련한 것이 많은데 주로 성범죄와 관련한 사항이 많다.

그리고 14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법률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경비업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년법, 수상레저안전법,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형법 등이 있다.

이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5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법 제38조에서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서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9조에서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형사미성년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14세를 기준으로 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입법례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또한 1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법률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국적법,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아동복지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등이 있다.

이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에서는 양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민법」 제869조에 따라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입법체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민법」 제869조는 13세 미만인 경우에 법정대리인이 입양을 승낙하도록 되어 있고, 13세 이상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비추어 본다면 양 법률의 기준연령을 일치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적법 제19조에서는 이 법에 규정된 신청이나 신고와 관련하여 그 신청이나 신고를 하려는 자가 15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732조에서는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39조제1항에서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청년의 나이를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례들의 분석을 본다면 각각의 입법 목적에 따라 연령기준에 차이가 발생하지만 피입양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현행 13세의 기준이 타당하다. 다만, 다른 법률에 있어서의 연령기준도 가능한 한 민법의 연령기준에 맞추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규정의 명확화

현행 민법 제869조제3항제2호, 제870조제1항제3호, 제871조제1항 등에서는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법률 규정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되어야 한다.⁴³⁾ 그런데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는 이에 대한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기준은 차후 법해석 및 법원의 판결례에 의해 어느 정도 그 기준이 설정되겠지만, 그 동안에 초래될 국민적 혼란을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의 기준을 민법전에 마련하여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2. 입양특례법

(1) 민법과의 조화문제

민법상의 양자제도는 보통양자와 친양자제도로 분류되어 있다. 다만 입양특례법 제14조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고 하여 입양특례법이 민법상의 친양자제도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법체계에 대해서 요보호 아동에 대해 부모의 선택에 따라 보통양자와 친양자가 결정되는 것은 양자의 보호에 문제가 될 수 있

43) 법령이 간결하고 함축적이어야 할 필요도 있지만,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문장의 간결성과 함축성을 유지하기 보다는 입법 의도를 정확하고 충분히 나타내는 내용이 법령문에 나타나도록 한다[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 법제처, 2006, 34면].

다는 입장이 있다.⁴⁴⁾ 그러나 일반적으로 특례법은 어떤 법령에 속하는 사안 중 특례를 정하는 입법으로⁴⁵⁾, 입양특례법은 요보호아동의 입양(入養)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養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⁴⁶⁾

즉 입양특례법은 민법이라는 일반법의 내용 중 요보호 아동에 대해 친양자제도의 효과를 부여하기 위한 예외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측면과 보통양자제도가 과연 요보호 아동에 대한 양자의 보호에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즉

민법이 양자에 관한 일반법이고, 입양특례법은 요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특례를 정하는 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보호대상범위의 차이가 있고, 입양특례법에서 규율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민법의 입양 규정이 적용될 것이므로, 양자 간의 충돌 문제는 없다고 할 것이다.

44) 미성년자를 보통양자와 친양자로 구분하는 정당한 이유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양자를 구분하는 것은 미성년 양자의 복리에도 적합하지 않다. 그러므로 민법상의 양자를 미성년 양자와 성년 양자로 구분하여 미성년 양자는 모두 친양자로 입양하도록 입법화하여야 할 것이다[장병주, “개정 입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논고, 제41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2, 527-528면].

45) 국회 법제실, 2011 법제실, 국회 법제실, 2011, 84면; 일반적으로 어떤 법령이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예외적(특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특례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와 같은 특별법과 특례법은 일반법에 대한 예외적(특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일반법이 없는 경우에는 제명에 특별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법제처, 전거서, 589면].

46) 2011년에 전부개정된 입양특례법의 개정이유로는 아동입양의 절차가 아동의 복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최선의 아동 보호는 출신가정과 출신국가 내에서 양육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 패러다임으로 국가 입양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 법률의 제명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입양특례법」으로 변경하고, 국내외 입양 모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친생부모에게 양육에 관한 충분한 상담 및 양육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모의 직접 양육을 지원하고, 아동이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나고 나서 입양동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양자가 된 사람에게 자신에 대한 입양정보 접근권을 부여하고, 국내입양의 우선 추진 의무화 등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이다[<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p=&query=%EC%9E%85%EC%96%91%ED%8A%B9%EB%A1%80>].

(2) 규정의 명확화

첫째, 현행 민법 제869조제3항제2호, 제870조제1항제3호, 제871조제1항 등과 마찬가지로 입양특례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는 친생부모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입양아동의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됨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다의적 해석의 여지를 줄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둘째, 입양특례법에서는 입양의 효력발생시기를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 또는 양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제15조).

이는 민법의 특례를 정한 것이므로 친양자제도와 관련하여 입양의 효력은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시라고 보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셋째, 입양특례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입양동의를 요건으로써 “입양동의를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4조에서는 이에 위반한 사항에 대한 벌칙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입법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입양특례법 제39조제1항제4호에서는 이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입양기관에 업무정지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라는 표현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조문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제 2 절 법제도적 관점

1. 국내입양우선추진제도

입양특례법 제7조는 국내입양 우선 추진을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의뢰 된 아동의 양친(養親)될 사람을 국내에서 찾기 위한 시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의뢰된 아동의 양친을 국내에서 찾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입양기관의 장은 국내입양을 위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양친을 찾지 못한 경우 입양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관련 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통하여 국내입양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입양기관의 장은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양친이 되려는 사람을 찾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국외입양을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현행 「국제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article4에 따르면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입양은 출신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아동이 입양가능하다고 인정했고, 출신국 내에서의 아동의 위탁가능성을 적절히 고려한 후 국제입양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입양특례법」 제8조에서는 국가는 아동에 대한 보호의무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외입양을 줄여나가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내입양을 원칙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국내입양우선추진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원칙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므로 일정한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원칙을 예외적으로 두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할 것이다.

2. 입양숙려제도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를 출산 직후의 불안정한 상황에서 직접양육에 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성급하게 이루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⁴⁷⁾ 입양특례법 제13조제1항은 입양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여 입양숙려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도입과 관련하여 아동돌봄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⁴⁸⁾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는 입양숙려제도의 도입에 따른 숙려기간 중 머물 수 있는 공간 및 산후조리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 등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숙려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기 위한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⁴⁹⁾ 구체적으로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의 대상은 출산 후 7일 이내의 미혼 한부모로써 선정기준은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자에 대한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미혼모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입양담당부서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시에는 일정한 구비서류⁵⁰⁾를 제출하여야 한다.

47) 김대회, 이해주의원 대표발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보건복지위원회, 2011.4., 3면.

48) 입양동의를 출산 후 7일 이후에 하도록 규정한 반면, 출산 후 병원에 머무르는 기간은 3일 남짓으로 아동돌봄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있고, 미혼모 시설에 입소하고자 해도 출생신고가 된 아동에 대해서만 입소를 받아주기 때문에 사실상 갈 곳이 없는 미혼모가 발생하게 된다[안재진, 전개토론문, 8면].

49) 보건복지부, 2013년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2013.4, 3면.

50) ① 혼인관계증명서, ② 출산(예정)일 증빙서류(의사진단서, 임신사실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 ③ 통장사본, ④ 미혼모자가족시설 등 입소사실 확인서(미혼모자가족시설 지원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⑤ 신청인과의 관계증명서(대리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참 고] 지원내용 : 미혼 한부모가 선택하는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
(1주일 원칙)⁵¹⁾

구 분	2013년	
	지원내용	지원단가
①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 ⁵²⁾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	° 500,000원 - 산후지원인력 서비스 이용료 * 아동 생필품비 포함
	°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	° 350,000원 * 아동 생필품비 포함
②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	° 250,000원 -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일부
③ 산 후 조리원 보호 지원	°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 최대 700,000원 ° 1주 이용료가 700천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실비 지원 *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

이와 같이 정부측에서는 입양아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입양숙려제도의 도입을 하고, 또한 아동돌봄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입양숙려제도의 시행상의 문제 제기는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입양 허가제도 및 출생신고 의무화

현행 「입양특례법」은 개정전 법률인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당사자 간 합의와 이에 따른 신고만으로 입양이 성립하여 입

51) 보건복지부, 전계자료(2013년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 안내), 4면.

52) 산후지원인력 : 가정방문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개인 산후지원인력의 경우, 지원불가), 가정 내 보호지원의 경우에만 해당

양아동에 대한 복리와 아동보호에 미흡하다는 점 및 국제적 추세를 감안하여,⁵³⁾ 입양에 있어서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를 의무화하고,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를 도입하였다.⁵⁴⁾ 그런데 이에 대하여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 허가제도 및 출생신고 의무화로 인하여, 미혼모의 사생활 노출 및 아동유기가 증가하고 있다거나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⁵⁵⁾

그러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도 및 출생신고 의무화는 자녀 복리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출생신고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국제기구로부터 출생신고가 아닌 출생등록제도로의 전환을 권고 받은 상황이다.⁵⁶⁾ 그리고 양친될 자가 있어 입양이 성립되고 나면 친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입양자의 인적사항 등이 말소되기 때문에 미혼모의 사생활 노출이 심각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53)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7조 “아동은 출생 즉시 등록되어야 하고, 가능한 한 자기 부모를 알고 부모에게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

54) 현행 제도 하에서는 입양제도가 아동의 복리와는 전혀 무관하거나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방향으로 악용될 위험이 상존함. 이러한 현실은 아동보호의 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가 자신의 임무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아동의 이익 최우선 원칙, 입양의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법기관의 심사를 통한 입양이 이루어지도록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개정안의 제안 취지이다[김대현, 최영희의원 대표발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보건복지위원회, 2011.4, 16면].

55) 현재 「입양특례법」상 입양 시 법원허가제가 도입되면서 아이의 출생신고 서류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미혼모들의 사생활이 노출돼 아동유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문제 등을 거론하며 「입양특례법」 재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71019305779487&outlink=1>].

56) 최근 2011년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2012. 10.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하여 현행 출생신고제를 출생자동등록제로 전환하도록 권고하기도 하였다[이한본, “입양특례법 법률안에 대한 의견”, 영아유기방지 위한 입양법 긴급공청회 자료집, 2013.4.10., 11면].

참 고 문 헌

- 김대현, 최영희의원 대표발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부 개정법률안 검토보고, 보건복지위원회, 2011.4.
- 김대회, 이애주의원 대표발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 검토보고, 보건복지위원회, 2011.4..
-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 법제처, 2006.
- 보건복지부, 2013년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2013.4.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진영 장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서명,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3.5.24.
- 성석호, 국제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2012. 9.
-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실무[I], 법원행정처, 2012.
- 안재진, “입양특례법 개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아동복지정책 현안과 정책과제 토론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4.5.
- 윤진수/현소혜, 2013년 개정민법해설, 법무부, 2013.
- 이한본, “입양특례법 법률안에 대한 의견”, 영아유기방지 위한 입양법 긴급공청회 자료집, 2013.4.10.
- 장병주, “개정 입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논고, 제41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2.
- 장성배, 해외입양, 입양특례법의 진실을 찾아서, 연합이매진 2013년 3월호, 연합뉴스, 2013.03.

참 고 문 헌

현소혜, “의명입양 제도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민사법학 제50호, 한국민사법학회, 2010.9.

金子 敬明, “養子制度の利用実態”, 千葉大学法学論集 第25巻第4号, 千葉大学法学会, 2011.3.

床谷文雄, 「提言(報告のまとめをかねて)」, 家族 〈社会と法〉 25号, 2009.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2708.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4&query=%EC%9E%85%EC%96%91%ED%8A%B9%EB%A1%80#liBgcolor5>.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421.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709075&sid=E&tid=8>.

http://www.incrc.org/html/gs_latest_news_view.php?idx=447&url=/html/gs_index.php.

http://nas.na.go.kr/site?siteId=site-20111206-000001000&pageId=page-20111207-000001087&bd_mode=read&bd_recordId=2013010005151.

<http://www.legifrance.gouv.fr/affichJuriJudi.do?oldAction=rechJuriJudi&idTexte=JURITEXT000017636211&fastReqId=476601251&fastPos=1>.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30220190301§ion=03.

<http://efamily.scourt.go.kr/cs/CsBltnWrtGuide.do?bltnbordId=0000009&guideCd=0000009004&guideYn=Y>.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p=&query=%EC%9E%85%EC%96%91%ED%8A%B9%EB%A1%80>.

http://www.diplomatie.gouv.fr/fr/actions-france_830/adoptioninternationale_2605/index.html.

<http://www.adoption.gouv.fr/IMG/pdf/rapportColombani.pdf>.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71019305779487&outlink=1>.